

마포로1구역제18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6. 18 .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97. 6. 18 .
- 더. 상정일자 : 제46회 임시회 제6차 위원회('97. 7. 12)상정.질의.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황정부 도시정비과장)

가. 제안이유

재개발 관련법규 및 사회적, 경제적여건 변화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심재개발 마포로1구역제18지구 재개발구역의 면적및 건축계획을 변경결정 요청하기 위하여 도심재개발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가. 대상지

- 위치 : 마포구 도화동 175-1번지의 3필지
- 면적 : 2,356.20㎡

나. 도시계획사항

재개발구역 / 일반상업지역 / 미관지구 / 방화지구 / 주차장정비지구

다. 토지및 건축물의 현황

1)토지

- 지목별 : 2,356.20㎡ (4필지)
 - 대지 : 2,343.20㎡ (3필지)
 - 도로 : 13.00㎡ (1필지)
- 소유별 : 2,356.20㎡ (4필지)
 - 사유지 : 2,343.20㎡ (3필지)
 - 국·공유지 : 13.00㎡ (1필지)

2)건물 : 2동 (3,583.47㎡)

- 구조별 - 철근콘크리트조 : 2동 (3,583.47㎡)
- 층수별
 - 5층 : 1동 (3,054.69㎡)
 - 2층 : 1동 (528.78㎡)

및 공공시설 면적을 포함하여 2,356.2㎡로 하며, 건축계획(변경)에 있어 건폐율과 용적율 등을 현황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것임.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 의한 동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와 의견청취는 기허 마친바 있음.

4. 결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 번호	196
----------	-----

제출년월일 : 1997. 6.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건 명 : 마포로1구역 제18지구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2. 상정사유

- 재개발관련법규 및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하며,
-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심재개발 마포로1구역제18지구 재개발구역의 면적 및 건축계획을 변경결정 요청하기위하여 도심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가. 대상지

- 위 치 : 마포구 도화동175 - 1번지 외3필지
- 면 적 : 2,356.20m²

나. 도시계획사항

재개발구역/ 일반상업지역/ 미관지구/ 방화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다. 토지 및 건축물의 현황

1) 토 지

- 지 목 별 : 2,356.20m² (4필지)
 - 대 지 : 2,343.20m² (3필지)
 - 도 로 : 13.00m² (1필지)
- 소 유 별 : 2,356.20m² (4필지)
 - 사 유 지 : 2,343.20m² (3필지)
 - 국·공유지 : 13.00m² (1필지)

2) 건 물 : 2동(3,583.47m²)

- 구조별 - 철근콘크리트조 : 2동(3,583.47m²)
- 층수별
 - ┌ 5층 : 1동(3,054.69m²)
 - └ 2층 : 1동(528.78m²)

라. 추진경위

- '79. 9. 21 : 재개발구역지정(건고시 345호)
- '80. 5. 19 : 재개발사업계획결정(건고시 제146호)

4. 입안내용

가. 사업의 명칭 : 마포로1구역 제18지구 도심재개발사업

나. 시 행 구 역 : 마포구 도화동 175 - 1번지의외 3필지

다. 시 행 면 적 : 2,356.20m²

- ┌ 대 지 : 2,101.20m²
- └ 공공용지 : 255.00m²

라.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 : 마포구 도화동 181-47번지의2필지 255.0m²

마. 변경결정(안)

○ 시행지구(변경)결정조사

(면적단위 : m²)

구분	지구명	위치	시행면적	대지면적	공공 시설	비고
기정	마포로1 구역제18	마포구도화동175-1 번지 일대		2,690.0		계획선 변경없이 현황측량결과에 의거 면적 정정 및 공공시설 면적포함
변경	지구	마포구도화동175-1 번지의3필지	2,356.2	2,101.2	255	

○ 건축계획(변경)결정조사

구분	지구명	건폐율 (%)	용적율 (%)	건축연면적 (m ²)	층수 (지상/지하)	높이 (m)	주용도
기정	마포로1 구역제18	21	148	3,990.0	6/1	-	업무시설
변경	지구	56.63 ~ 60.00	1,012 ~ 1,100	34,286.04 ~ 39,699.62	22/8	92.15	업무시설

사. 변경사유 : 재개발관련법규 및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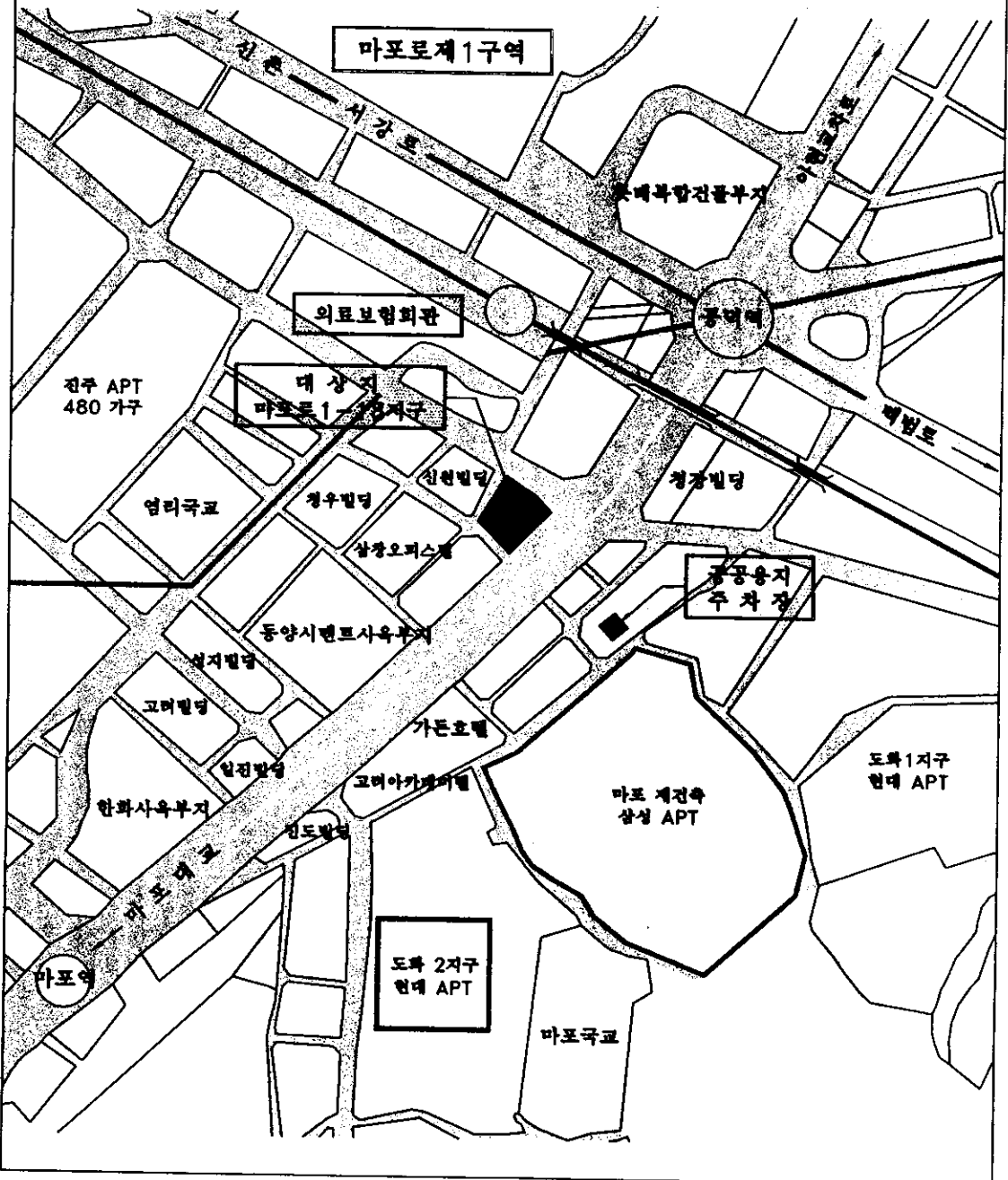
아. 기타

○ 공고 및 공람

- 건 명 : 마포로1-18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 공람기간 : '1997. 5. 22. ~ '1997. 6. 4(14일간)
- 게재신문 : 세계일보, 한국경제신문 → '1997. 5. 21일자
- 공람장소 : 마포구청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 의견접수 : 없음

도시계획현황도



마포로1-18지구 조감도

